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제5조 표준회의 심의사항 정비 (안 제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「산업표준화법」 개정으로 인증심사 유형을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에 따라 표준회의의 심의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표준회의 심의사항에 인증심사 유형의 신설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(제4항제3호의2 신설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인증심사 유형 결정 절차의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제7조 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 정비 (안 제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인증심사 유형의 품목별·분야별 적용을 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, 인증대상 지정취소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기술심의회 조사·심의사항에 인증심사 유형의 품목별 또는 분야별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(제1항제3호의2 신설)

○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"지정"을 "지정 또는 지정취소"로 정비(제1항제3호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인증심사 유형 결정 절차의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3. 제18조의2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 (안 제18조의2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에서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정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결함 발생 시 국민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, 고유한 특성상 화재·폭발·감전·붕괴 등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을 고위험 광공업품으로 규정

○ 구체적인 품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안전관리 대상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품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부칙에서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고시되는 품목부터 적용하도록 함

4. 제18조의3 조문번호 정비 (안 제18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제18조의2 신설에 따라 조문번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종전 제18조의2(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)를 제18조의3으로 이동하고 인용 법 조문을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조문 체계의 일관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5. 제20조 부합화 및 상충 방지 (안 제20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에 산업표준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·표준 간 상충 방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조문 제목을 "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및 상충 방지"로 하고, 협의 대상을 "부합화 및 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"으로 확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산업표준과 타 법령 기준 간 중복·상충의 사전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6. 제24조 제품 인증심사 종류 추가 (안 제24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설계·개발자 중심의 OEM 방식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, 제조공장이 없거나 공장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도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제품 인증심사의 종류에 품질관리심사(제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)를 추가(제2항제1호의2 신설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설계·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인증 취득 기회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부칙에서 이 영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

7. 제26조의2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삭제 (안 제26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인증심사 유형별 심사 종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정기심사·이전심사의 종류를 영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짐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를 규정한 제26조의2를 삭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영과 규칙 간 중복 규정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8. 제27조 시판품조사 등 (안 제2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시판품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료 채취 범위와 절차 위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 제조공장 외에 소비자·수요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용 전 상태에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(제1항 단서)

○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조사 절차·방법 등을 산업통상부령에 위임(제3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시료 확보 범위 확대로 시판품조사의 실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9. 제29조 수거등 명령의 절차 (안 제29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에서 제품 수거 외 수리·교환 등을 포함한 수거등 명령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명령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조문 제목 및 명령 절차에서 "제품수거"를 "수거등"으로, 인용 조문을 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정비(제1항)

○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거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(제2항)

○ 이행계획서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,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도록 함(제3항)

○ 수거등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(제4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보완요구 등은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규제 해당 여부 검토(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 참고)

라. 입법효과

○ 이행 여부의 체계적 관리로 소비자 위해 확산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종전 제3항(결과 서면 보고)을 삭제하고 제4항으로 통합

10. 제29조의2 이행점검 등 (안 제29조의2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21조의2에서 수거등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명령을 규정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수거등 이행현황을 점검하되, 결과보고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서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(제1항)

○ 보완명령의 방식(제품명·상표·모델명, 보완명령 내용을 포함한 문서)을 규정(제2항)

○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(제3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보완명령 이행기한 등은 규제 해당 여부 검토(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판단)

라. 입법효과

○ 수거등 명령의 이행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1. 제29조의3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 (안 제29조의3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 품목명·상표·모델명, 명령 사유 및 내용, 명령을 받은 자의 상호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소비자에 대한 위해정보 신속 제공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2. 제29조의4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(안 제29조의4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온라인 유통환경에서의 인증도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(인증표시 관련 게시물·상품정보·광고, 판매자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연락처)를 규정(제1항)

○ 요청 문서의 기재사항(법적 근거, 자료 내용·범위, 제출 기한·방법)을 규정(제2항)

○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 내 제출하고,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제3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자료제출 기한 설정은 법 집행절차의 구체화로서 규제 해당 여부 검토

라. 입법효과

○ 온라인 불법 유통 조사의 신속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3. 제29조의5 불법 제품·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중지 등 (안 제29조의5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범위와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게시물·상품정보의 삭제 및 해당 페이지에 대한 접속경로 차단으로 규정(제1항)

○ 요청 서면의 기재사항(법적 근거, 위반행위 내용, 조치 내용·기한)을 규정(제2항)

○ 기술적·운영상 사유로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조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제3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온라인상 불법 제품·서비스의 신속한 유통 차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4. 제29조의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의 지원 (안 제29조의6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24조의2에서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및 인증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지원 대상을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정함(제1항)

○ 지원 비용을 인증심사·정기심사·이전심사에 필요한 시험·검사 비용 및 수수료로 정함(제2항)

○ 지원사업(기술지도·컨설팅, 시설·장비 공동활용, 시험인프라 구축)을 규정(제3항)

○ 공모 등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(제4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인증 취득 부담 경감 및 인증 접근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5. 제30조의2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현황 분석·평가 (안 제30조의2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29조제4항에서 부합화 현황의 분석·평가 및 공개를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분석·평가 항목(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비율, 분야별 부합화 비율 등)을 규정(제1항)

○ 결과를 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른 국가표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(제2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표준정책의 투명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6.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조문번호 정비 (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제30조의2 신설에 따라 조문번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종전 제30조의2(실태조사)를 제30조의3으로, 제30조의3(품질경영추진본부)을 제30조의4로, 제30조의4(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)를 제30조의5로 이동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조문 체계의 일관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7. 제32조 권한의 위임·위탁 (안 제3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개정으로 신설·변경된 사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(제1항) 위임 사무에 인증심사 유형,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, 수거등 명령·공표·이행점검, 온라인 자료제출·조치 요청, 전담기관 지정, 중소기업 인증비용 지원, 단체표준 촉진 사업, 우수기업등 지정 등을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

○ (제2항) 위탁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고, 삭제되는 수거 완료 확인 보고 관련 규정(제1항제24호의2, 제2항제6호)을 정리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신규 사무의 소관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8. 제33조 및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(안 제33조, 별표 4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법 제44조제2항이 신설되고 신규 의무에 대한 과태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부과기준의 근거를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비(제33조)

○ 자료제출 요청 불응, 조치 요청 불이행, 조사·확인조사 거부·방해·기피, 수거등 이행계획서 미제출 및 결과보고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종전 위반행위를 조 구분에 맞게 재배열(별표 4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신설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 등 규제 해당 여부 검토

라. 입법효과

○ 신규 제도의 실효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19. 별표 1의2 인증표시 제거·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기준 (안 별표 1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조사 체계가 시판품조사·현장조사·제2항 조사·확인조사로 개편되고 수거등 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개별기준을 조사 종류별(법 제20조제1항·제2항,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로 재편하고 정기심사 핵심품질 부적합 기준 등을 신설·조정

○ 일반기준 바목의 제품수거를 법 제21조의 표시제거 및 법 제21조의2의 수거등으로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처분기준의 명확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개정 내용이 크므로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검토 필요

20. 별표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 (안 별표 3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조정

○ 부처명 표기를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정기심사 주기 등과의 정합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